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76호

양평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

서울시고시 제2008-79호(2008.03.20) 및 서울시고시 제2009-200호(2009.05.14.)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된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,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1. 해제사유

본 구역은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(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)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(원안가결) 됨

2.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

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(기본계획) 해제

구분	구역 번호	위 치	면적 (㎡)	용적률	건폐율 (%)	사업시행 방식	정비 유형
기정	양평동11	양평동1가 148-8 일대	51,000	주거공간 230%+α 산업공간 400%	60이하	도시환경 정비사업	철거
변경	해 제						

□ 도시환경정비구역(계획) 해제

○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명 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정	양평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	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-8번지 일대	46,727.60	
변경	해 제			

○ 정비계획

- 용도지역 : 해당없음

-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 (㎡)	비 율 (%)	비 고
계 획 구 역 면 적		46,727.6	100.00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
정비기반 시 설	소 계	10,878.3	23.28	
	도 로	7,072.4	15.14	
	녹지 및 공원	공원-1	3,216.0	6.88
		공원-2	589.9	1.26
획 지	소 계	35,849.3	76.72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
	택지1(공동주택)	22,774.5	48.74	
	택지2(공동주택)	6,061.5	12.97	
	택지3(산업시설)	4,911.0	10.51	
	택지4(노유자시설)	337.2	0.72	
	택지5(종교시설)	508.4	1.09	
	택지6(노유자시설)	254.3	0.54	
	택지7(업무시설)	333.8	0.71	
	택지8(업무시설)	668.6	1.43	

- 정비기반시설 계획

▪ 공 원

결 정 구 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명 칭	세분류		기정	변경	변경 후	
기 정	공원-1	어린이 공 원	218번지 일대	3,216.0	-	-	
변 경	공원	어린이 공 원	205번지 일대	3,216.0	감)1,748.6	1,467.4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원 면적 및 위치 환원
기 정	공원-2	소공원	222-12번지 일대	589.90	-	-	
변 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

· 도 로

결정 구분	규 모					기능	사용 형태	위 치	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길이(m)	폭원(m)			기 점	종 점		
기정	대로	2	143	3,100	30	간선 도로	일반 도로	영등포동2가 147	양평동2가 490		구역내 버스베이 설치
환원	대로	2	143	3,100 (187)	30	간선 도로	일반 도로	영등포동2가 147	양평동2가 490		버스베이 폐지
기정	중로	1	1	236	2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222-5 번지	205 번지		
변경	중로	1	1	236	15	집산 도로	일반 도로	222-5 번지	205 번지		도로폭 변경 (20→15m)
기정	중로	2	2	42	15	집산 도로	일반 도로	245-1 번지	245-2 번지		
환원	소로	1	1	42	1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245-1 번지	245-2번지		도로폭 환원 (15→10m)
기정	중로	2	1	186	15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16-1 번지	222-5 번지		
환원	중로	2	1	186	15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16-1 번지	222-5 번지		구역내 완화 차로 폐지
기정	중로	3	1	185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10-4 번지	118 번지		
환원	소로	2	8	185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10-4 번지	118 번지		도로폭 환원 (12→8m)
기정	소로	1	10	134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70 번지	216-2 번지		
환원	소로	2	10	278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70 번지	164-4 번지		도로폭 및 연장 환원 (12→8m)
기정	소로	2	7	85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19-5 번지	218 번지		
환원	소로	2	7	186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19-5 번지	116-48번지		도로연장 환원
기정	소로	3	3	85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17-5 번지	269 번지		
환원	소로	3	3	90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17-5 번지	269 번지		도로폭 환원 (8→6m)
폐지	소로	2	9	186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90번지	164-1번지		
환원	소로	2	9	186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90번지	164-1번지	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환원
폐지	소로	3	4	90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05번지	193-1번지		
환원	소로	3	4	90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05번지	193-1번지	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환원
폐지	소로	3	5	86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20-3번지	120-32번지		
환원	소로	3	5	86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20-3번지	120-32번지	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환원

■ 건축시설 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연면적 (㎡)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
	명 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양평 제11 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정비 구역	46,727.60	택지-1	22,774.5	143일대	86,600	공동주택	30 이하	230 이하	120m 이하
			택지-2	6,061.5	118일대	23,400				
			택지-3	4,911.0	116-1일대	30,600	산업시설	60 이하	400 이하	50m 이하
			택지-4	337.2	216-2번지	870	노유자시설 (어린이집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			택지-5	508.4	217-17일대	2,400	종교시설	60 이하	400 이하	32m 이하
			택지-6	254.3	217-1일대	350	노유자시설 (경로당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			택지-7	333.8	217-4일대	450	업무시설 (파출소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			택지-8	668.6	222-10일대	2,700	업무시설 (자치센터)	60 이하	400 이하	30m 이하
			계	35,849.3	-	147,370	-	-		
	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○ 건립규모 :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/ 지하2층, 지상27~38층 ○ 건설비율 ▶ 조합 및 일반분양 (총506세대, 82.95%) - 전용 85㎡ 초과 : 114세대, 18.69% (114.24㎡ 56세대, 101.91㎡ 58세대) - 전용 85㎡ 이하 : 392세대, 64.26% (84.92㎡ 99세대, 84.76㎡ 99세대, 84.53 68세대, 84.73㎡ 52세대, 84.70㎡ 16세대, 84.81㎡ 29세대, 84.71㎡ 29세대) ▶ 임대 (총104세대, 17.05%) (55.62㎡ 11세대, 47.53㎡ 15세대, 43.30㎡ 26세대, 41.22㎡ 2세대, 33.34㎡ 50세대)								
		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○ 건축한계선 계획 - 6m 건축한계선 : 30m(영등포로), 25m(선유로)도로 - 3m 건축한계선 : 15m(양산로), 12m, 20m도로 - 기타 건축법,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.							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		

▪ 시행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	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
기정	관리처분 계획	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을날로부터 4년 이내	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	현황:526세대 계획:610세대 (증) 84세대	해당사업 없음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3. 위치도 및 해제도면 : 붙임과 같음

4.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

-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
- 실효일 : 고시 게재일

5. 관련서류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(02-2133-4646) 및 영등포구 주택과(02-2670-3538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도면

양평 제11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도면

□ 위 치 도



□ 정비구역 해제도

